지식경제부 보도자료	함께하는 공정사회! 더 큰 희망 대한민국 http://www.mke.go.kr
2012년 7월 10일(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
자료문의 : 지역투자팀장 김미애(02-2110-5091), 사무관 위승복(5094)	

지방투자촉진보조금, U턴 기업도 지원한다

– U턴 기업 지원과 기업 부담완화를 주요 골자로 고시개정–

□ 지식경제부(장관 홍석우)는 '지방투자 촉진보조금' 고시를 개정해 해외에서 국내 비수도권으로 U턴하는 기업에도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밝힘

○ 이와 함께 사후기간 단축, 지원 절차 간소화, 보증보험 부담 완화 등 보조금 지원 기업의 불요불급한 부담을 과감히 없애기로 하였음

<U턴기업 지원>

□ U턴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지난 비상경제 대책회의 시(4.26) 발표한 국내투자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,

○ 지자체에게는 U턴 기업 유치 활동을 위한 실질적인 수단을 제공하고 U턴 기업에게는 직접적인 인센티브가 제공되어, 향후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 복귀가 점차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됨

□ 이에 따라 U턴 기업은 금년 하반기부터 수도권 지방이전 기업과 마찬가지로 투자비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음

○ 지역별로 지원수준의 차이는 있으나 원주, 아산 등 수도권 인접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으로 복귀하는 중소기업의 경우, 기업이 매입하는 입지비용의 최대 40%*, 설비투자비의 최대 10%까지 지원받게 됨

* U턴 기업에 대한 입지보조 최대 한도는 국비기준 5억원

○ 다만, 최근 3년간 보조금 지원 실적이 전체 보조금 예산의 5% 미만인 지역(광역자치단체 기준)으로 복귀하는 경우는 지원 비율이 높아짐

<보조금 최대 지원 비율>

지역분류	매칭비율 (국비:지방비)	이전기업·U턴 기업		
		대기업	중견기업	중소기업
일반지역	(70:30)	입지(–) 투자(5%)	입지(20%) 투자(7%)	입지(40%) 투자(10%)
수도권 인접지역	(50:50)	입지(–) 투자(3%)	입지(–%) 투자(5%)	입지(15%) 투자(7%)
지원실적 저조지역	(80:20)	입지(–) 투자(7%)	입지(30%) 투자(10%)	입지(45%) 투자(15%)

* 지원실적 저조지역 : 최근 3년간 지원실적이 전체 보조금 예산의 5% 미만인 광역 지자체
* 수도권 인접지역 : 조특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수도권과 인접한 기초 지자체 (원주, 홍천, 충주, 음성, 청주, 진천, 아산, 천안, 당진)

□ U턴 기업이란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내 복귀 기업을 말하며,

- 국내 생산시설이 없는 기업이 국내에 생산시설을 신설하는 경우
- 국내 생산시설이 있는 기업이 국외 사업장을 청산하거나, 자산 또는 지분 전부를 양도하고 국내에 사업장을 신증설 하는 경우
- 국내 생산시설이 있는 기업이 최근 2년간과 비교하여 국외 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 또는 생산물량을 50%이상 감축하고 국내에 사업장을 신증설 하는 경우

○ U턴 기업이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

- 국외 사업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할 것
- 국외 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이 최근 2년간 30명 이상일 것
- 국내 복귀 후 국내에서 창출한 신규고용이 30명 이상일 것
- 국내 사업 개시일로부터 4년 이내에 국외 사업장 철수를 완료할 것 (단, 국외 사업장 청산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)

<기업부담 완화>

□ 보조금을 지원받는 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기간을 현행 7년에서 5년으로 약2년 단축하였음

○ 이는 지나치게 긴 사후관리* 기간으로 인해 기업이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대응하기 곤란하고, 개정된 사후관리 기간으로도 충분히 지방정착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임

* 보조금을 지원받는 기업은 사후관리 기간 동안 부지매각, 업종변경 없이 사업을 영위하여야 함

□ 이와 함께 기업의 보증보험* 부담도 완화하기로 하였음

* 보조금을 지원받는 기업은 투자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이 원칙이나, 기업 사정 상 불가피할 경우 보증보험으로 대체 가능

○ 기업의 사업영위 기간이 점차 경과함에 따라 사고 발생 시 환수할 금액이 이에 비례하여 감소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보험가액도 연차별로 차감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음

□ 이 밖에도 보조금 지급 심사 시 기업 임직원 출석을 생략하는 등 기업의 절차적 부담을 완화하였으며, 보증보험 부담도 추가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임

<효력발생 시기>

□ 지경부는 지난 6월 29일 관련 내용을 포함한 고시*를 개정한 바 있으며, 지자체 조례개정이 완료되는 지자체부터 개정된 내용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시작할 예정임

*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

○ 다만, 사후관리 기간 단축 등의 사항은 지원 기업간 형평성 문제를 고려하여 '12년도 보조금을 신청한 기업부터 적용될 예정임

□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'U턴 기업을 유치하는 지자체에게는 보조금 추가 배분 등 별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며, 금년 중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하겠다'고 밝힘

참고1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제도개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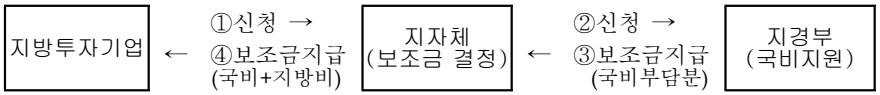
□ **(보조금 제도 개요)** 지자체가 기업유치 과정에서 기업에 지원하기로 한 보조금을 국비·지방비 매칭(일반지역 70:30)으로 지원

○ 지원유형 : 수도권기업 이전*, 지방 신증설 투자**, U턴 기업***

* 수도권에 소재한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보조금 지원
** 국내 소재 중소기업이 비수도권에 신증설 투자할 경우 보조금 지원
*** 해외진출기업이 국내 비수도권으로 복귀할 경우 보조금 지원

○ 지원내용 : 입지보조·설비투자 보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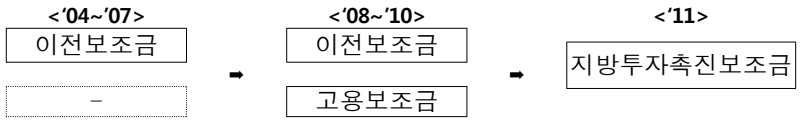
○ 지원절차 : 지자체가 유치한 기업에 대해 지경부에 신청하면 지경부는 지원타당성을 평가하고,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원 결정



* 모든 지방투자기업에 보조금을 자동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가 유치한 기업(MOU를 체결 등)에 대해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선별지급

□ **(추진경과)** 기업의 지방투자를 촉진하여 수도권의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 경쟁력을 도모하기 위해 보조금 제도를 '04년 도입

○ 그간 「이전보조금」 및 「고용보조금」으로 운영하다 '11년부터 「지방투자촉진 보조금」으로 통합 운영



○ '04~'11년간 총 4,926억원을 지원(지방투자촉진 4,106억원, 고용보조 820억원)